

전공동아리활동평가시행세칙

제정 : 2006. 3. 1

개정 : 2014. 3. 1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전공동아리운영규정 제9조에 각 학과 전공동아리들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활동이 건전하고 우수한 전공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전공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재정)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은 학생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
제3조(평가) 평가는 전공동아리에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 의하여 입학학생처에서 평가한다. <개정 2006.11.21., 2010.4.1., 2014.3.1>

제4조(평가기준) 전공동아리 평가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.

제5조(평가방법 및 시기) 평가는 학기말에 전공동아리에서 제출한 서면보고서를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우수 전공동아리를 선정한다.<개정 2009.7.17>

제6조(포상) 우수 전공동아리로 선정된 전공동아리에게는 전공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며, 필요한 경우 입학학생처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1.21, 2009.7.17., 2010.4.1., 2014.3.1>

제7조(징계) 종합평가 결과 성적이 부진한 전공동아리에 대해서는 입학학생처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징계할 수 있으며, 전공동아리의 해체 등과 같은 중대사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한다. <개정 2006.11.21, 2009.7.17., 2010.4.1., 2014.3.1>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학학생처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1.21., 2010.4.1., 2014.3.1>

부칙 <2006.4.12>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11.21>

1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0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7.17>

1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0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4.1>

1. (시행일) 이 개정세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3.1>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전공동아리활동 평가 기준표

구 분	평가 항목	평 가 내 용	평 가				비 고
			A	B	C	D	
1	계 획 실천	동아리 연간 활동계획서 이행 실적	3	2	1	0	
		계획대비 실천율(%)	80%이 상	79% ~ 60%	59% ~ 40%	39%이 하	
2	교내 활동	교내 행사 개최 실적	전시회 등 개최실적				*건 당1점 (5건 한도)
	교외 활동	외부행사 및 경진대회 출품 및 참여 실적	외부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실적				*건당 1점(5건 한도)
		외부행사 및 경진대회 입상 실적	3 1위	2 2위	1 3위	0	*개인전 ; 대회당 1건 간주 *1등, 2등, 기타 입선

※ 외부행사 및 경진대회 참여 등 증빙 첨부, 입상실적 증빙 첨부